

대전광역시교육청 「비공개 대상 정보」 세부기준

▶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1호 ~ 제8호 ◀

■ 공통 업무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밀정보 | ○ 직무상 알게 된 비밀 | 제1호 |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|
| 통계업무 | ○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| 제1호 | 통계법 제33조 |
| 보안업무 | ○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○ 암호자재 현황, 비밀관리기록부 ○ 비밀취급인가 관련 정보 | 제1호 제2호 | 보안업무규정 제23~25조 |
| 국가안보 | ○ 기타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제2호 | |
| 민원 | ○ 민원내용, 민원인, 민원내용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 정보(민원사무처리부,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) ○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) 단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○ 각종 신고 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○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(중앙행정심판위 05-05) | 제1호 제6호 |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|
| 연구용역 | ○ 각종 연구용역 등 중간 성과물 | 제3호 | |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|
|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, 검토, 협의,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-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-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-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- 회의 발언자 인적 사항(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) (수원지법 2008.11.3.2008구합6364) | 제5호 | |
| 심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관련 정보 | 제5호 | |
| 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해평가의 수행자, 지표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성상 사전 공개할 경우 평가목적 실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제5호 | |
|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(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기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의 기획,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| 제5호 | |
| 사업계획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(대구지법 2006구합820) | 제5호 | |
| 개인정보보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력, 성명, 직업, 건강진단서,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○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(대부, 기여금, 보상금, 공무원증 발급 등) | 제6호 | |
| 상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창대장, 공적조서 등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정보공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정보 | 제6호 | |

■ 감사관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공직자 재산등록 | ○ 공직자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 | 제1호 |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|
| 감사업무 | ○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○ 범죄사건 관련 진정·내사 자료 ○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1호 제4호 제7호 |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|
| 감사·감찰 | ○ 불시 감사·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·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제5호 | |
| 민원조사 | ○ 위법·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명단 | 제3호 | |
| 수사관련 정보 | ○ 수사의뢰 협조 관련 서류, 보고서, 고발서류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 등 | 제4호 | |
| 법률위반 공무원 조사 및 처리 | ○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, 보고서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 | 제3호 제4호 | |
| 공무원 범죄처리결과 | ○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검찰,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(인적사항, 범죄내용, 처리결과 등) | 제6호 | |
| 공직기강 | ○ 공직복무 점검 계획 | 제5호 | |

■ 기획예산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|
| 시도교육청 평가 | ○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진행과정에 있는 문서 (평가계획서, 평가보고서, 평가관련 증빙서 등) | 제5호 | |
| 성과관리 | ○ 성과관리 점수, 순위 등 개인별 평가 결과 및 평가점수 현황 | 제5호 제6호 | |
| 조직 및 정원 관리 | ○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(확정 후 공개 가능) | 제5호 | |
| 재정투자 심사 | ○ 투자심사자료, 실무심사위원회·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, 심사조서 등 | 제5호 제6호 | |

■ 혁신정책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|
| 정보보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○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세부 현황 자료 (시스템 정보, 망구성도, IP주소 현황 자료 등) ○ 정보화사업 산출물 ○ 사용자계정·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○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관련 자료 ○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자료 | 제2호 | |
| 시도교육감 협의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자료 | 제5호 | |
| 마을교육 공동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을교사, 마을학교 운영자, 참여학생 개인 정보 | 제6호 | |

■ 교육복지안전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학원·지도 감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내역, 위반유형 등 (단, 통계목적의 위반학원수, 위반유형 등은 공개 가능) | 제7호 | |
| 지도점검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시 지도점검·조사·단속 계획 등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점검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제5호 | |
| 비영리법인 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영리(공익)법인 임원 개인정보,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 ○ 비영리(공익)법인 인허가 문서, 재산의 취득·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제6호 제7호 | |
| 저소득층자녀 지원(학비, 정보화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소득층 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(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 등) | 제6호 | |
|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원 개인정보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 ○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승인 문서, 재산의 취득·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제6호 제7호 | |

■ 교육정책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원 단체교섭 | ○ 교직원 단체(교총, 노조)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에듀힐링센터 상담운영 | ○ 에듀힐링센터 상담 대상자(교직원, 학생, 학부모)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| 제6호 | |
| 교육활동보호 | ○ 교육활동 침해 사안 내용과 결과에 관한 정보 (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서,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 등) | 제6호 | |
|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| ○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의 실시와 결과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교육활동보호 상담 | ○ 교육활동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학생·보호자 특별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교육기본법 제23조 (학생정보의 보호원칙) |

■ 유·초등교육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|
| 시험 | ○ 교원의 임용시험, 자격시험,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, 시험출제관리, 시험출제위원 명단, 시험관리관 선정,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○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 개인정보 | 제5호 제6호 | |
| 인사관리 | ○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 ○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관련 정보 ○ 공무원 임용, 인사평정,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·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○ 인사기록카드, 인사교류신청, 전보내신서, 채용 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관리, 징계심의의결·결정 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 제6호 | |
| 교육공무원 상훈 관리 | ○ 훈·포장 추천자 명단(추천자 관련 주민번호 등)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, | 제6호 | |

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
| | 형벌사항 여부 조회,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등 | | |
| 퇴직 | ○명예퇴직 신청서 및 심사자료,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 내역 | 제6호 | |
| 교원 연수 | ○각종 연수 이수 성적 | 제6호 | |
| 유치원 평가 | ○유치원 평가 관련 심사, 선정, 순위 등 | 제5호 | |

■ **중등교육과**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학교생활 기록 관리 | ○ 학생생활기록부 정보 | 제6호 | |
| 시험 | ○ 교원의 임용시험, 자격시험,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, 시험출제관리, 시험출제위원 명단, 시험관리관 선정,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○ 시험원서·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·학력·주소 등 개인정보 | 제5호 제6호 | |
| 인사관리 | ○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 명부 ○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관련 정보 ○ 공무원 임용, 인사평정,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·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○ 인사기록카드, 인사교류신청, 전보내신서, 채용 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 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 제6호 | |
| 교육공무원 상훈관리 | ○ 훈·포장 추천자 명단(추천자 관련 주민번호 등)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, 형벌사항 여부 조회, 포상 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등 | 제5호 | |
| 퇴직 | ○ 명예퇴직 신청서 및 심사자료,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 내역 | 제6호 | |
| 교원 연수 | ○ 각종 연수 이수 성적 | 제6호 | |
| 교원 자격증 발급 | ○ 자격증 발급자 개인정보 ○ 자격증 발급 신청자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징계 | ○ 징계위원회의 회의, 위원명단, 회의록 등 | 제1호 |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, 제19조 |

■ 체육예술건강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|
| 감염병 예방 관리 | ○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 중 알게 된 비밀 | 제1호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|
| 난치병 학생 관리 | ○ 난치병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교육환경보호 구역 관리 | ○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체육교육 | ○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○ 체육특기자 신청자 개인정보 ○ 학교운동부지도자 성과상여금,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및 해임, 급여관련서류 | 제6호 |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 규정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10조, 제13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|
| 예능교육 | ○ 각종 예능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| 제6호 | |

■ 민주시민교육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|
|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| ○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※ (제한적 공개) 피해학생·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요청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| 제1호 |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(단,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제한적 공개) |
| 성폭력 예방 | ○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 | 제1호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|
| Wee 프로젝트 | ○ Wee 프로젝트 상담 대상 학생·학부모 개인정보 | 제6호 |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|

■ 총무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직자 병역 | ○ 병역사항 신고서,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관련 서류 | 제1호 |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|
| 을지연습 | ○ 을지연습 관련 문서(기본계획, 자체사건계획, 보고서 등) | 제2호 | |
| 총무계획 | ○ 총무계획 관련 문서(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등) | 제2호 | |
| 직장민방위대 운영 | ○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○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| 제2호 | |
| 직장예비군 운영 | ○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○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| 제2호 | |
| 청사방호 관련 정보 | ○ 청사 설계도 등에 관한 사항 ○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○ 경비일지, 순찰일지, 순찰경로 등 경비에 관한 사항 ○ 범죄 예방을 위한 청사 순찰일지, 청사 경비 시스템 ○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·구조·경비 등에 관한 정보 | 제3호 제4호 | |
| 인사관리 | ○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 후보자명부 ○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관련 정보 ○ 공무원 임용, 인사평정,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·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○ 인사기록카드, 인사교류신청, 전보내신서, 채용 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(단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제5호 제6호 | |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징계 | ○ 징계위원회의 회의, 위원명단, 회의록 등 | 제1호 | 공무원 징계령 제20조, 제21조 |
| 시험 | ○ 공무원 임용시험, 자격시험,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, 시험출제관리, 시험출제위원 명단, 시험관리관 선정,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○ 현재 진행중인 시험(일반직 임용)에 관한 정보 (중간 석차 등) | 제5호 | |
| 단체교섭 | ○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5호 | |

■ 담당부서: 행정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송업무 | ○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| 제1호 | 형사소송법 제47조 |
| 교육행정심판 업무 | ○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, 회의록 및 심리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○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·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| 제1호 | 행정심판법 제41조,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|
| 행정·민사 소송 | ○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○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, 청구서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, 소송 대응방침, 증거자료, 법률자문 결과, 사실조회 결과, 조서 등에 관한 정보 ※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| 제4호 | |
| 자치법규 개정 | ○ 자치법규 개정 이전의 개정안 및 검토의견 자료 단, 입법예고안, 시의회 제출 법령안 제외 | 제5호 | |
| 교육공무직원 채용 | ○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, 시험출제관리, 시험출제위원 명단, 시험관리관 선정,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| 제5호 | |
| 교육공무직원 관리 | ○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근로자명부 등에 포함된 근로자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급여내역 등) ○ 교육공무직원 채용, 근무성적평정, 전보 등 내부 검토·협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○ 전보내신서, 징계 심의·의결·결정 통지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교육공무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(단, 특정 근로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제6호 | |
| 학교설립 | ○ 학교시설결정,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·후 관련 정보 | 제8호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도시계획 시설결정 | ○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 제8호 | |
| 학교군·학구 관리 | ○ 학교군·학구 개편 시 TF 명단, 협의자료 등 | 제5호 제6호 | |

■ 담당부서: 재정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입찰계약 정보 | ○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- 예정가격조서, 계약내역 사양서,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, 유자격자명부 등 ○ 입찰과정 중 제출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| 제5호 | |
| 급여압류 | ○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시설공사 등 각종계약 업무 | ○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7호 | |
| 법인관리 | ○ 학교법인의 인·허가 문서, 재산의 취득·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○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| 제7호 제8호 | |
| 공유재산 | ○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○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, 학교부지 매수 계약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제8호 | |
| 교육금고관리 | ○ 금고지정 계획서, 신청서 및 심의자료 등 금고 지정에 관한 정보 | 제5호 제7호 | |
| 채권관리 | ○ 채무자 재산조회, 압류, 경매 등 채권관리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
■ 담당부서: 시설과

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 정보 | 비공개 근거 | 비고(관련법) |
|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시설 관리 | ○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| 제1호 |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|
| 설계·감리 | ○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| 제1호 |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|
| 공사·용역 | ○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| 제1호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|
| BTL사업 | ○ BTL 실시협약 내용, BTL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의 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생산기술, 내부관리 또는 영업상의 비밀 | 제7호 | |

※ 본 기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의 업무 위주로 제정되어 각급 기관(학교, 직속기관 등)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인 경우 해당 정보가 부존재할 수 있음.

< 참고 >

| 조항 | 내용 | 관련 사항 및 정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<p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</p> | <p>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·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·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· 기타법률의 취지,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|
| <p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</p> | <p>국가 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제회의·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·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·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|
| <p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</p> | <p>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사관계 조회사항 ·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(청사)에 대한 도면도 등 ·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· 방재,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· 중간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· 범죄행위, 위법행위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 · 인감업무,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·변조,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| <p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</p> | <p>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·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·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|

| 조항 | 내용 | 관련 사항 및 정보 |
|--|--|--|
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 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사·감독·검사 관련 정보 · 시험 관련 정보 ·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· 입찰 관련 정보 · 기술개발 관련 정보 · 인사 관련 정보 ·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|
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통장계좌번호, 급여,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·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· 감사재판·행정심판의 결과,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 처벌이 되는 사항 |
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|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” 등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·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·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, 그 영업 이익·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 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|
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|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기·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|